

공금증을 풀어드립니다

중앙상담실은 건강·법률·세무·보험·가정·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의 공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.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메일 (vopinion@koreadailytv.com), 전화(718-361-7700)를 이용,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이민
송주연 변호사

취업영주권 진행 중 혼인

최종 승인 전 혼인신고 후 증거자료와 함께 동반 신청 가능

문: 현재 취업영주권을 진행 중이고, 마지막 단계인 I-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. 최근 몇 년간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결혼하기로 해서, 지금 혼인 신고를 하면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의 배우자로 함께 영주권 획득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.

답: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의 동반 배우자로 함께 영주권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본 신청자인 질문자의 영주권 신청서가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. 현재 I-485가 이미 접수된 상황이므로, 이런 경우 언제 이민국에서 영주권의 최종 승인을 해 줄지 모르니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혼인 신고를 완료하도록 한다. 혼인신고만 된다면 배우자가 될 사람의 영주권 신청서는 질문자의 영주권이 승인된 후에 접수되어도 무방하다. 질문자의 경우, 본 신청자가 영주권을 획득하기 바로 직전에 배우자와 혼인을 하여 영주권을 진행하기

때문에, 취업영주권이라고 해도 두 사람의 혼인이 진실한 결혼인지를 보기 위한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고, 인터뷰도 접할 수 있다.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진실한 것이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. 부부의 결혼이 영주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, 평생을 함께할 뜻을 갖고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는,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보이는 임대차 계약서, 함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, 함께 사용하는 은행의 잔고증명서, 한 거주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각종 공과금 명세서, 자동차 보험 증서, 건강 보험 증서, 함께 보고한 세금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, 결혼식이나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함께 첨부하면 좋다.

추후 접수된 배우자의 신청서로 인해 본 신청자의 영주권 승인이 지연되거나 하진 않는다. 배우자의 신청서가 일찌감치 접수되었다면 함께 검토되어, 혹시 인터뷰가 있어야 하는 경우 같은 날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. 하지만, 배우자의 신청서가 늦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, 본 신청자의 신청서가 먼저 승인되고 배우자의 신청서는 추후 별도 검토가 되고, 혹은 단독으로 인터뷰가 스케줄 되는 경우도 있다. 그러므로,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으로 함께 영주권 획득을 하고자 한다면, 본 신청자의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.

만일, 본 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된 후 혼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, 본 신청자가 진행했던 취업영주권의 동반 배우자로 영주권 획득이 불가능해진다. 이 경우 배우자 영주권을 획득하려면 이미 영주권자가 된 본 신청자는 가족초청으로 새로운 영주권 청원을 해야 배우자가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.

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문호 상황은 I-130 청원서를 접수한 후 대략 2년 6개월 정도의 대기가 보이는 상황이다. 그러므로 I-130 청원서를 접수한 후 2년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배우자가 본인의 I-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, I-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적어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. 또한 I-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어야,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접수가 가능하다.

질문자의 경우, 현재 I-485 신청서가 이미 접수되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사들려 하고, 두 사람이 부부라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잘 모아 제출한다면, 배우자의 영주권 또한 큰 지연 없이 승인될 것이다.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사들려 배우자 될 사람의 영주권 획득이 크게 지연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. 212-868-2200, 718-360-9316, www.songnlaw.com

공금증을 풀어드립니다

중앙상담실은 건강·법률·세무·보험·가정·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의 공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.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메일(hyopin@koreadaily.com), 전화(718-361-7700)를 이용,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이민
송주연 변호사

취업영주권 진행 중 혼인

최종 승인 전 혼인신고 후 증거자료와 함께 동반 신청 가능

문: 현재 취업영주권을 진행 중이고, 마지막 단계인 I-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. 최근 몇 년간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결혼하기로 해서, 지금 혼인 신고를 하면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의 배우자로 함께 영주권 획득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.

답: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의 동반 배우자로 함께 영주권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본 신청자인 질문자의 영주권 신청서가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. 현재 I-485가 이미 접수된 상황이므로, 이런 경우 언제 이민국에서 영주권의 최종 승인을 해 줄지 모르니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혼인 신고를 완료하도록 한다. 혼인신고만 된다면 배우자가 될 사람의 영주권 신청서는 질문자의 영주권이 승인된 후에 접수되어도 무방하다. 질문자의 경우, 본 신청자가 영주권을 획득하기 바로 직전에 배우자와 혼인을 하여 영주권을 진행하기

때문에, 취업영주권이라고 해도 두 사람의 혼인이 진실한 결혼인지를 보기 위한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고, 인터뷰도 접할 수 있다.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진실혼이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. 부부의 결혼이 영주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, 평생을 함께할 뜻을 갖고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는,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보이는 임대차 계약서, 함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, 함께 사용하는 은행의 잔고증명서, 한 거주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각종 공과금 명세서, 자동차 보험 증서, 건강 보험 증서, 함께 보고한 세금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, 결혼식이나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함께 첨부하면 좋다.

추후 접수된 배우자의 신청서로 인해 본 신청자의 영주권 승인이 지연되거나 하진 않는다. 배우자의 신청서가 일찌감치 접수되었다면 함께 검토되어, 혹시 인터뷰가 있어야 하는 경우 같은 날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. 하지만, 배우자의 신청서가 늦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, 본 신청자의 신청서가 먼저 승인되고 배우자의 신청서는 추후 별도 검토가 되고, 혹은 단독으로 인터뷰가 스케줄 되는 경우도 있다. 그러므로,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으로 함께 영주권 획득을 하고자 한다면, 본 신청자의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.

만일, 본 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된 후 혼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, 본 신청자가 진행했던 취업영주권의 동반 배우자로는 영주권 획득이 불가능해진다. 이 경우 배우자 영주권을 획득하려면 이미 영주권자가 된 본 신청자는 가족초청으로 새로운 영주권 청원을 해야 배우자가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.

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문호 상황은 I-130 청원서를 접수한 후 대략 2년 6개월 정도의 대기가 보이는 상황이다. 그러므로 I-130 청원서를 접수한 후 2년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배우자가 본인의 I-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, I-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적어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. 또한 I-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어야,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접수가 가능하다.

질문자의 경우, 현재 I-485 신청서가 이미 접수되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사들려 하고, 두 사람이 부부라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잘 모아 제출한다면, 배우자의 영주권 또한 큰 지연 없이 승인될 것이다.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사들려 배우자 될 사람의 영주권 획득이 크게 지연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. 212-868-2200, 718-360-9316, www.songnlaw.com